

[별표 4] <개정 2015.2.16.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(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)을 따르며,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. 다만,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| 위반행위 | 근거 법조문 | 과태료 금액(만원) | | |
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|
| | | 1차 | 2차 | 3차 이상 |
| 가. 법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| 법 제43조제3항제1호 | 50 | 100 | 200 |

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|
| 나. 법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(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) | 법 제43조제1항제1호 | 400 | 800 | 1,500 |
| 다. 법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| 법 제43조제3항제2호 | 50 | 100 | 200 |
| 라. 법 제5조제1항 후단, 제5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5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| 법 제43조제3항제3호 | 50 | 100 | 200 |
| 마.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| 법 제43조제4항제1호 | 25 | 50 | 100 |
| 바.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43조제2항제2호의2 | 200 | 400 | 800 |
| 사. 법 제10조제3항, 제13조제4항이나 제20조제3항·제4항을 위반한 경우 | 법 제43조제2항제3호 | 800 | | |
| 아.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| 법 제43조제3항제4호 | 300 | | |
| 자.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·인원, 점검장비 및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43조제3항제5호 | 50 | 100 | 200 |
| 차.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43조제1항제2호 | 400 | 800 | 1,500 |
| 카. 법 제11조제4항이나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| 법 제43조제1항제3호 | 1,200 | | |
| 타.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| 법 제43조제2항제1호 | 200 | 400 | 800 |
| 파.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| 법 제43조제2항제2호 | 200 | 400 | 800 |

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|
| 작성·보존하지 않은 경우 | | | | |
| 하.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용기등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43조제3항제6호 | 50 | 100 | 200 |
| 거.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·판매 기록을 작성·보존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43조제2항제3호의2 | 200 | 400 | 800 |
| 너.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| 법 제43조제1항제4호 | 400 | 800 | 1,500 |
| 더. 고압가스 제조신고자,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,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가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지 않거나 권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 | 법 제43조제4항제2호 | 25 | 50 | 100 |
| 러. 법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·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한 경우 | 법 제43조제1항제5호 | 400 | 800 | 1,500 |
| 머. 법 제23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경우 | 법 제43조제4항제3호 | 25 | 50 | 100 |
| 며. 법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| 법 제43조제2항제4호 | 500 | | |
| 서. 고압가스 제조신고자,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가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| 법 제43조제1항제6호 | 400 | 800 | 1,500 |
| 어.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| 법 제43조제2항제5호 | 150 | 300 | 600 |
| 저.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| 법 제43조제1항제7호 | 250 | 500 | 1,000 |